

제 36호

1973. 4. 18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양택식

편집 :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8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444·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763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표창조례..... 3
◎ 고 시	
제 5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일부변경(폐지).....11
◎ 직 인 개 각 11
◎ 사 령 11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594

조 **제**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표창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3. 4. 1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교육감 하건 생

◎ 서울특별시조례 제 763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표창조례

제정 1973.4.14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서울특별시교육 및 교육정책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자와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여기서 "자"라 함은 상수원, 기관,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에게 수여한다.

제 3 조 (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 우수상, 협조상의 3종으로 한다.

제 4 조 (표창권자) 표창은 교육감이 행한다.

제 5 조 (공적상) 공적상은 소독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수여한다.

1. 성실회 직무를 수행하여 교육 및 교육정책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
2. 장기근속자로서 헌신적인 봉사 와 탁월한 근무로서 당위권위 또는 교육계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3. 교육 및 교육행정승발담당을 위하여 건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

제 6 조 (우수상) 우수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수여한다.

1. 교육 학예 및 체육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자.
2. 각종 전시회 경연대회 경연대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7 조 (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수여한다.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대외적으로 당위원회의 명예와 지위를 높인 선양한 자.
3. 학생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 8 조 (표창의 규격 및 서식) 공적 표창, 구공상 및 협조상의 규격 및 서식은 별지 제 1 호 내지 제 3 호 서식에 의한다.

제 9 조 (표창방법 및 수상) ① 표창을 명할 때에는 공적장에 있어서는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구공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 3 호 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전항의 표창을 명할 때에는 상급 상급 기타 무상을 수여할수 있다.

제 10 조 (표창수천) ① 소속장(본청의 직과장, 교육구청장, 교육학교장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1은 표창대상자를 수천할 때에는 별지 제 4 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5일 이내에 표창권자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② 본청의 국장과 관청의 소속장을 표창할 때에는 서무과장이 전항의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5일 이내에 표창권자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공적심사위원회설치)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 12인 이하의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제 12 조 (표창시기 및 이종표창금지) ① 표창은 정기표창과 임시필요에 의한 수시로 시행할 수 있는 표창이 있다.

②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종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 13 조 (추서) 표창을 받을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정 수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가음함겨 이를 받을 수 있다.

제 14 조 (위임규정) 이 조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조제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조제에 의한 표창권자로 규정된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조제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

제 1 호서식

(38 cm X 52 cm = 8 절)

제 호

표 창 장

소 속

직 성 명

(표 창 문 안)

교 위 마 크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제 2 호 서식

(38 cm X 52 cm = 8 권)

제 호

상

장

소 속

직

성 명

(표 장 문 안)

교 위 마 크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제 3 호서식

(32 cm × 52 cm = 8 장)

세 호

감 사 장

소 속

직 성 명

(감 사 문 안)

교 위 마 크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공 적 조 서			
본 적		근 무 기 간	년 월 일
주 소		수 공 기 간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소 속		과 지	
직 위 직 명		대 운 관 계	
성 명	(한 자)	추 원 운 령	
생년월일	19	사 령 관 령	
공 적 사 랑			

고 시

관계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별 시민복사실에 비추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게 한다.

○서울특별시고시 제 5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변경 (폐지)

서울특별시 고시 제 3 호(69.1.18)로 정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폐지)을 도시계획법 제 12조와 제 13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고시한다.

1973. 4. 14

서울특별시장

가. 노선변경 (폐지)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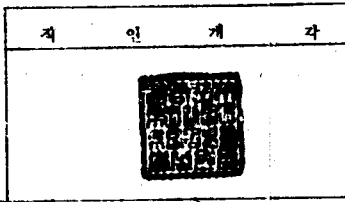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축원(㎞)	연장(㎞)	기	계종	적비	고
기존	소로	4		4	73	비아동 481-6	미아동 482-8		제
변경

별첨 도면포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에 보관

본 입수입원 직인 개 각

1. 영등포구 수도사업소의 본입수입원 직인을 이해와 같이 개각시행하였거 공표함

아 네



사 명	성 동 구 보 건 소 (보 건 지 도 과 장) (영 성 동 보 건 소 천 호 지 소 장)
◎ 1973. 4. 13 공 무 선 교 육 원 서 기 관 박 유 서 원 의 하 여 그 직 을 면 함 국 가 공 무 처 법 제 78 조 제 1 호 및 제 2 호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전 책 에 처 함	지방외무기과 오 부 회 ◎ 1973. 4. 18
◎ 1973. 4. 14 시 설 과 지 방 토 복 기 사 보 채 수 권 원 의 하 여 그 직 을 면 함 마 도 별 원 지 방 보 건 기 관 보 민 영 만 남 부 병 원 파 견 군 무 를 명 함	단 속 과 지 방 토 복 기 사 보 김 도 현 환경순찰관 근무를 명함 환경순찰관 지 방 토 복 기 사 보 신 공 석 단속과 근무를 명함
도 시 가 스 사 업 소 지 방 전 기 기 사 보 이 재 연 연 로 과 73.5.10 일 까 지 파 견 군 무 를 명 함	수도관리사업소 지 방 토 복 기 관 황 정 부 도 시 가 스 사 업 소 군 무 를 명 함
◎ 1973. 4. 16 서 계 문 구 지 방 행 정 주 사 직 별 호 대 동 명 비 서 실 파 견 군 무 를 명 함	경 남 지 방 행 정 주 사 2 차 직 용 서울특별시 권인용 명함 지 방 행 정 주 사 보 에 입 함
◎ 1973. 4. 17 중 구 보 건 소 지 방 간 호 기 사 이 인 욱 원 의 하 여 그 직 을 면 함	6 호 병 용 급 함 성 북 구 군 무 를 명 함
서 알 록 별 시 장	